

공

고

장수군 공고 제2024-263호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Д	기	관	의	장	
선					
람					

정기 제529호 2024, 3, 15.(금)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4-238호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장수군 공고 제2024-254호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7 장수군 공고 제2024-255호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2 장수군 공고 제2024-305호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9 장수군 공고 제2024-306호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33 장수군 공고 제2024-306호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33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62

회				
람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공고 제2024-238호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장 수 군



1. 개정이유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탁운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O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운영위원회 설치 주체를 군수에서 센터장으로 변경
- O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운영위원회 위원 수 변경(13명 이내 → 11명 이내)
 -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대상 변경

구 분	기 존	변경(개정안)
위원장	부군수	위원 중 호선
당연직	부군수 군 행정지원과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업무 담당과장	장수군 풀뿌리교육지원센터장 군 행정지원과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업무 담당과장
위촉직	-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삭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3. 2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 2) 전화번호(팩스): 063-350-2166(063-350-5705)
 - 3) 전자우편(이메일): kdy353@korea.k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063-350-216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나.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	법	규	명	:
--	----	---	---	---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74	비고
사시합비한 대중	찬성	반대	= = = = = = = = = = = = = = = = = = = =	견	미끄

조례 제 호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군수는"을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센터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3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업무"를 "센터장, 교육업무"로, "업무담당과장"을 "교육업 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포함 되도록"을 "포함되도록 센터장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원"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위원"을 "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u>군수는</u> 센터의 효율적 운영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
을 위하여 장수군 풀뿌리 교육	라 한다)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②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5 <u>센터 운영에 필요한</u>
<u>인정하는</u>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3명</u> 이내의 위원으로	<u>11명</u>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② <u>위원장과</u>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③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u>교육</u>	<u>센터</u>
<u>업무</u> 담당과장, 장수교육지원청	<u>장, 교육업무</u>
<u>업무담당과장</u> 으로 한다. 위촉직	<u>교육업무 담당과장</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민관학이 적정하게 <u>포함되도</u>	<u>포</u> 함되도
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록 센터장과 협의하여

見

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	지 아니	하여	야	한
다						

- 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 원
- 2. ~ 5. (생략)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제9조(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 7. (생략)

- 1. ----- 사 람
- 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 ----- 하고,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제12조(위원의 해촉) ------
 - ----- 센터장과 협의 하여 해당 위원-----
 - 1. ~ 7. (현행과 같음)

장수군 공고 제2024-254호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1. 개정이유

O 장수사랑상품권 고액권 발행 및 할인율 확대로 예산 절감과 사용자 휴대 편의를 증진시키고 상품권 소비촉진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품권 종류 구체화 및 고액권 발행 반영(안 제4조제3항)
 - (현행) 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 (개정)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나. 상품권 할인율 범위 확대 반영(안 제14조제3항)
 - (현행) 권면 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 (개정)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민생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다. 제출기간 : 2024. 3. 5. ~ 2024. 3. 25.(20일간)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마.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전화: 063-350-2183. 팩스: 063-350-5708)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담당자 (전화: 063-350-21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 나.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	이법규명 :
------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찬 반	: 여 부	ما	71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	반대	의	견	비고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권면"을 "종류는 종이형 외에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정할 수 있고, 종이형의 권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만원권

제14조제3항 본문 중 "5"를 "1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아 혀 했 개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② (생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③ ----- 종류는 종이형 외에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정할 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있고, 종이형의 권면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3만원권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 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 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상품권 ----- 10 -----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 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 의 경우 월 50만원, 연 600만원 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한 시적으로 할인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며 또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장수군 공고 제 2024-255호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장 수 군



1. 개정이유

가. 상품권 사용 활성화 및 전통시장 육성발전을 위해 전통시장 내 장옥 및 노점도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가능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나. 개정 중인 조례와 중복되는 상품권 할인율 10% 예외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 가. 상품권 가맹점 지정대상 개정(안 제6조제1항)
 - 별지 제4호서식 구비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장옥 및 노점은 사용수익허가증 1부.) 2. 통장사본 1부."로 개정

- 나. 상품권 할인율 범위 삭제(안 제11조제2항)
 -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설·추석 명절 및 재난·재해 시에는 10%로 할인율을 규정하는 사항이 개정 중인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민생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다. 제출기간 : 2024. 3. 5. ~ 2024. 3. 25.(20일간)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마.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전화: 063-350-2183, 팩스: 063-350-5708)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담당자 (전화: 063-350-21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 나.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7 -ì	비고
가시합니는 네공 	찬성	반대	7	견	H 1/2

장수군 규칙 제 호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을 "개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장수	·사랑상품권 가	맹점 지	정 신청서	
	상 호	<u>ŏ</u>	업 종 및		
			취급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신	네 표 자		성 별	(남,여)	
청	사 업 자		전화번호 :		
인	등록번호		(휴대폰 :)
낻	사 업 장				
	소 재 지				
	주 소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수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장수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장옥 및 노점은 사용수익허가증 1부.)

2. 통장사본 1부.

2024. 3. 15.(금)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4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4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 ----- 「정부유 유가증권 취급규정 및 「어음 가증권취급규칙 . -----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등 관 련규정을 준용한다. -----_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1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제11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 · 추석명절 및 재난 · 재해 시에 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 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구매 의 경우 월 100만원, 연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 • 단 체의 경우 월 500만원, 연 5,000 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_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시	· [[별지 제4호서식]			
장수사랑상품	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장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상 호 업종및 취급종목			
신 대표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전 대표자 생년월일 성 별 (남,여)			
청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 (휴대폰 :)	정 사업자 전화번호: 등록번호 (휴대폰:) 사업장			
사 및 정 소 제 지 주 소		소개지 주 소			
H .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년 욀 일 (서명 또는 인)	선 정 인 : (서명 또는 인)			
	관련법령에 따라 강수사랑 상품권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법」등 완편법령에 따라 장수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등의함.			
	<u> </u>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NP 1부.	장수군수 귀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2호, 및 노경은 사용수익하기증 1부.) 2. 동작사본 1부.			

장수군 공고 제2024-305호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장 수 군



1. 제정이유

장수군에서 생산하여 유통 및 판매되는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통합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된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 및 품목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1) 사용 대상품목 : 상품류별 제29류, 제30류, 제31류, 제32류, 제33류
- 2) 품목의 표준규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고시한 표준규격 다.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3조)
 - 1) 위원회 구성: 위원장(농산업건설국장) 1인, 부위원장(위원중에서 선출)

1인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2) 위원회의 기능: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 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5조)
- 마. 공동브랜드 관리 및 사용권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9조)
 - 1) 브랜드 사용기간 : 승인일로부터 2년(2년 단위로 연장가능)
 - 2) 사용권자 지원 내용 : 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홍보마케팅 등실시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사업을 지원
- 바. 그 밖에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안 제22조)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농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기간: 2024. 3. 14. ~ 2024. 4. 3.(20일간)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농산유통과
 - 2) 전화번호(팩스): 063-350-1711(063-353-3371)
 - 3) 전자우편(이메일) : kym2929@korea.kr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063-350-171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 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 나.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키키베 구시. · 비 0	찬 반 여 부		ol	7-1	nj a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	반대	의 견	선	비고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이 소유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특산물"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하거나 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상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 2.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군에서 개발한 상표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 3. "사용권" 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사용자"란 사용권자의 참여 농가를 말한다.
- 4. "품질관리 책임자"란 브랜드 사용권자가 지정한 자로 브랜드 사용자의 품질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사용품목 표준규격) ① 브랜드 사용품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산림청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규격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브랜드 사용권자 및 사용자는 사용품목의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로 구성하다.
 - ③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한다.
 -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과장
 - 2. 위촉직 위원
 -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나. 유통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대표
- 다. 군내 농특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
- 라.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의 심의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 2.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3. 공동브랜드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기 피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 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 팀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
 -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신청) ①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심사기준,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승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승인 번호 부여는 별표 3 규정을 따른다.
- 제16조(브랜드 사용기간) ① 브랜드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품목의 종류와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만료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관리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 ② 공동브랜드 사용권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및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환, 환불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브랜드 사용승인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 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 2.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통보된 경우
 - 4. 전업이나 폐업 또는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5.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 6.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 7. 브랜드관리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 8. 기타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및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 ② 브랜드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원예산업발전

계획의 전략품목 및 육성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브랜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 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브랜드의 활성화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공동브랜드 박스 지원, 브랜드 품질유지에 필요한 지원, 생산 및 유통지원 등의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청문)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 차법」 제22조에 따른 당해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브랜드 상표(제2조 관련)

1. 모양 및 색상



- 2. 의미: "장수에서 가꾸고, 먹으면 장수한다."는 중의적 표현
- 3. 전용색상



[별표 2]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제3조 관련)

상품류별	상 세 품 목	
제29류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과실가공식품, 발효 채소식품, 채소 가공식품, 두부,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제30류	도정(搗精)한 곡물, 쌀, 곡물가공식품, 면류, 과자, 빵, 설탕,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차(茶), 커피, 차음료	
제31류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미가공 채소, 신선한 채소, 신선한 허브, 살아있는 식물 및 꽃, 신선한 과실	
제32류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비알코올성 음료,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음료용 재료, 맥주, 식혜	
제33류	막걸리, 소주, 증류식 소주, 과실주, 과일와인, 사과주, 알코올성 과일음료, 와인, 증류주, 오미자주	

[별표 3]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번호 부여방법(제15조 관련)

승인번호 부여방법 및 부여예시

【숭인번호 부여방법】

0000 - 000

(승인년도) - (승인 일련번호)

፠ 부여방법 설명

- 승인년도는 브랜드 사용 승인을 최초로 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 일런번호는 신청년도와 관계없이 승인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부여예시】

- 2024년도에 첫 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2024-001』로 표기한다.
- 승인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번호를 계속 사용함

・당초인증 : 2024-001 ・기간연장 : 2024-001 장수군 공고 제2024-306호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장 수 군



1. 제정이유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 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행규칙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나.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신청대상자: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농특산품 제조·가공 업체 다.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심사기준, 처리절차, 결과통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7조)

- 심사기준 : 경력(영농, 영업), 연간매출액, 자체상표 사용, 판매물량 및 판매처, 공동선별 수준, 입지여건(생산, 영업장소), 품질관리 열의도, 자체 품질관리 수준,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관리 실태 등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예비심사(필요시) → 위원회 개최 → 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 결과통지 :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 통보
- 이의신청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4조)
 - 사용기간 연장 : 기간 만료일 60일전에 신청
 - 표시방법 : 상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르며,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원칙
 -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 브랜드 관리의 책임, 사후관리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 (참조: 농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제출기간 : 2024. 3. 14. ~ 2024. 4. 3.(20일간)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농산유통과
 - 2) 전화번호(팩스): 063-350-1711(063-353-3371)
 - 3) 전자우편(이메일) : kym2929@korea.kr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063-350-171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고
사사합비한 대통	찬성	반대	9	신 	H 72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대상자) ①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브랜드"라 한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농특산품 제조·가공 업체로 한한다.
 - 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는 장수군에 있어야한다.
-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품질관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 3.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단체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서식)
 -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서식)

- 7.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제4조(심사기준)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특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처리절차)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브랜드 사용 승인신청서 가 제출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및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이 제출한 심사기준표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 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 책임자를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 제7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와 불복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기간 연장)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를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브랜드 사용 연장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표시방법) ①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상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상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 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 ③ 포장재에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브랜드 사용권자가 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 용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위반 및 처분)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권자 및 사용자가 별표 2의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브랜드 사용을 승인받은 단체의 일부 사용자가 브랜드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브랜드 사용권자가 행한 행위로 간주하고 처분할 수 있다.
- 제12조(품질관리 책임자 지정) ① 브랜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는 담당 업무자를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자가 없는 경 우에는 사용자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사용자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브랜드 관리의 책임) 군수는 사용권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생산자단체관리, 홍보마케팅 등 브랜드 관리 분야별 책임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브랜드 관리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 1. 브랜드 사용 승인관리, 홍보·마케팅관리 등은 브랜드 총괄관리부서 에서 담당한다.
- 2. 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지도, 생산자단체관리, 생산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 및 농업기술센터에 서 담당한다.
- 제1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브랜드사용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토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품질관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필요시 브랜드 사용품목 등에 대해 수시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브랜드 사용권자는 매년 1회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출하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브랜드 사용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스 티커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포 장재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되, 관계공무원 및 품질관리 책임자 는 반기별로 작성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표

	₹	신청지	· : 단체(성명) :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평 가 점 수
			○10년 이상	10	
	①커런(어노 어	191)	○ 5년 이상 10년 미만	8	
	①경력(영농, 영	3월/	○ 3년 이상 5년 미만	6	
일			○ 3년 미만	4	
반			○ 연간매출액 5억원이상	10	
여	②연간매출액	n = .n	○연간매출액 3억원이상	8	
 건	※ 사업자 총 미 기준	매줄액	○연간매출액 1억원이상	6	
			○연간매출액 1억원미만	4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10	
	③자체상표 사	용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7	
			○자체상표 없음	4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음	10	
	④판매물량 및 판매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함	7	
생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단기간에 확보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함	4	
산 .			○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10	
여	⑤공동선별 수준		○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7	
건			○ 농가 자가 선별포장	4	
			○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10	_
	⑥입지여건(신 영업 장소)	생산,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7	
	0 10 000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4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평 가 점 수
		○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 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 적이 있음	10	
	⑦품질관리 열의도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 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7	
품 질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	4	
관 리		○선별, 보관, 포장, 출하시스템을 갖추고, 자체 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관리가 체계 적임	10	
여	⑧자체 품질관리 수준	○자체 품질관리사가 없고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출하 전까지 자체관리	7	
건		○ 자체 품질관리는 실시하고 있으나 품질관리 체계 미흡	4	
		○3년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 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10	
	⑨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관리 실태	○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 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7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4	
가 점	⑩가점사항	○ 수출실적,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GAP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부여(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0	
	합 계		100	점

[평가방법]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으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의결(적합판정)을 얻어야 함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성명)

[별표 2]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
-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 신고 시 양수인이 이를 승게한 것으로 봄
- 위반행위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근의 행정처분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기준을 적용

2. 개별기준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	행	정처분기	준
트랜드 사용되면 생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시행규칙 제9조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 3개월	승인취소
나. 조례 별표1의 BI디자인을 변형하여 사용하 였을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 6개월	승인취소
다.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 3개월	숭인취소
라. 브랜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 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 6개월	승인취소
마.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 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 3개월	숭인취소
바. 농약안전 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 우	시정명령	사용정지 6개월	승인취소
사. 품질관리 책임자와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	사용정지 3개월	승인취소	
아. 출하품 검사에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사용정지 3개월	승인취소	
자.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 의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	승인취소	

പേഷില വിർദിവി ജിദി	행	정 처 분 기	준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차.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 하는 경우	승인취소		
카. 승인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 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정지 3개월	사용정지 6개월	숭인취소
타.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 6개월	승인취소
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정지 3개월	승인취소	
하. 사용정지 기간 중 사용한 경우	승인취소		
거. 사망 등 유고로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취소		
너.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 보 시	사용정지 3개월	승인취소	

[별지 제1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											
	단체명						대표	표자명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반	번호 (호)				칟	남여	농가수			
신 청	자본금			백만원 직전년도 총매출액				백만원			
인	사업장 주	소									
	상시 종업원 4	È	총 :	원:	명(사	무직		명 / 생산 명)	직	명 /	품질관리
	보유인증 (직접기자										
생	품목(품종	5)			생산	기간			출	하기간	
산 파	소재지								자	배면적	ha
생 산 판 매 획	생산계획	량						상표사용 하계획량			
왹	상품특성	ļ									
상표사	품목	신청 :	 농가	출하량(팀	톤) 포	장단위	리	포장사용 [©] 수	배	사용기긴	주출하처
상 표 사 용 계 획											
 생산:	 자별(참여농기	나 가) 조	.서 : 별	 불지 제3호							
「장수	-군 농특산물	공동	등브랜드	E 사용에	관한	조례	시형	행규칙」제:	3조(에 따라 4	위와 같이
장수	군 농산물 공	동브	랜드를	사용하고	1자 신	청합L	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	표)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1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참부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 서식] 수수료 서류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없음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최근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계획서

Ⅱ 신청자 일반현황

- 경영체명:
- 대 표 자 :
- 0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 연 락 처

구 분	성 명	전 화	휴 대 폰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대표자					
담 당 자					

2 신청조직 구성

- 조직형태:
- ※ 협동조합,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기타
- 품질관리방법
- 규격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품질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선별작업: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 포장작업 : 포장센터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 수송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 저장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③ 운영실태(구체적으로 작성)

- 생산(재배, 사육, 가공)실태
- 안전성분야 실태
- _
- 시설분야 실태(현황 포함)
- _
- _
- 위생분야 실태
- _
- _
- 선별 및 포장실태
- _
- 품질관리 실태(차별화 대책 포함)
- _
- 유통실태(운영과정 등)
- _
- 기타(특기사항 등)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 기재
- _

4 월별 출하계획

○ 월별 출하계획

(단위 : 천원)

품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판매처 및 유통방법(유통선 다변화 계획 등)

- 학교급식 및 단체 급식을 통한 판매
- 지역판매장 운영을 통한 판매
- 유통업체(대기업)업체를 통한 판매
- 대형마트 입점을 통한 유통 판매계획

군

[별지 제3호서식]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품목명		신	청 자		재배 면적	생산량	출하량	비고
<u> </u>	성 명	주	소	연락처	(m _s)	(톤)	(톤)	-175

[별지 제4호서식]

품질준수 서약서

단체명	대표자	(참여농가수	호)
품 목 (품종)	출 하 계획량		

- 1. 위 본인은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준수서약서를 제출하며,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 등 제반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 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 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

성 명: 인

장 수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품질	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단 체 명		주 소
(생산자)		(연락처)
	성 명	
	주 소	
품질관리	연 락 처	
책 임 자	품목(품종)명	
	관리지역	
	자 격 증	
	성 명	
	주 소	
품질관리	연 락 처	
책 임 자	품목(품종)명	
	관리지역	
	자 격 증	
	성 명	
	주 소	
품질관리	연 락 처	
책 임 자	품목(품종)명	
	관리지역	
	자 격 증	

상기인은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동브랜	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
신	단체(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핸드폰)
자	주 소	
승	승 인 번 호	
인 현	품목(품종)명	
황	당 초 승 인 기 간	
연	장 사 유	
연	장 기 간	
변	동 사 항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연장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그 외 첨부서류는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승인서

○ 숭 인 번 호:

- 사 용 자:
- ○주 소:
- ○품 목 명:
- (연 장)숭 인 일 :
- 숭 인 만 료 일 :

위와같이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적인

군

[별지 제8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승인	승 인 내 역			사	용	권	자	확인
일자	번호	품목	기간	단체(업체)명	성명	주소	연락처] 복인

[별지 제9호서식]

		공동	<u></u> 등브	랜드	사용	뭄	목	출	하실	실적		
사	단체(업	は체)명				법업	법인등록번호					
용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일				
권	주:	소					침	여동	가수			
자	전화	번호					គ៌	대	폰			
승	승인	번호					3	품목 (품	종)			
인 내	승인:	기간										
: 역	소 지 (공장,사	내 지 :업장등)										
출	구 분		품	목	생산물량(톤	트) 출	출하물량(톤)		금액(천원)		출하처	
하	상 빈	<u></u> 기										
실	하 빈	<u></u> 기										
적	겨	I										
포	구	분	포장단	난위(kg)	제작량(매)	사용량((PH)	재고링	╞(미)	출하처	
장 재	상 빈	<u></u> 기										
사	하 빈	<u></u> 기										
용	겨	I										
	사용원회	.	주	원 료		•		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		주생	산지역						•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스티커 수급대장(사용권자)

□ 포장재 종류 : ○○ (2kg Box)

□ 포장재 보관장소 : ○○○

수급	수 급 내 역			수	급	자	#101
일자	제작량	반출량 (사용량)	재고량	농가명	주소	연락처	확인

[별지 제11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사용대장(사용자)

□ 포장재 종류 및 인수량: ○○ (2kg Box)

□ 포장재 보관장소 : ○○○

(단위: 매)

								(단위: 매
			출현	하량 	포장지	개 • 스티?	커사용 	-
포장 단위	수량	포장 단위	수량	출하처	사용	멸실	재고	확인
	포장단위	생산량 포장 수량						생산량 출하량 포장재 • 스티커사용

[별지 제12호서식]

		확	인	<u>I</u>	人	ł	
생산(판매)자 성명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장소		
품 목 명					승인번호		
위 반 내 용							
특기 사항							
• 생산(판 • 조사자	주 성 소 직	성명 : 소 : 명 :	실을 인	(? (?	고 확인합니 일 전화 : 인)	Ξ+.	

[별지 제13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

■ 승 인 번 호 :

■ 생 산 자:

(연락처 :

)

- 주 소:
- 품목(품종)명 :
- 지 정 내 용 :
- 중 지 기 간 :
- 사 유: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인)

장수군수 귀하

장수군 고시 제2024-18호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장 수 군



1. 장수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T 7 78	귀시	기 정	변 경	변경후	여소 설생될	비꼬
_	두산지구 개발진흥지구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46번지 일원	-	증)13,147	13,147	그회	

2.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m²)	변경(폐지) 사유
신설	-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46번지 일원	13,147	○젊은 귀농귀촌인이 적은 비용으로 안 정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거주시 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전북형 귀농귀 촌 보금자리 조성을 위해 주거개발진 흥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도면 : 붙임 생략

장수군 공고 제2024 - 26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구분		소	:재지		면적	(m²)	소유자		
丁世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적	지정	성명	주소	
소계				2필지	82,672	82,672			
제3종 수원함양	장수	계북	원촌	1392-5	43,989	43,989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보호구역	장수	계북	원촌	산48	38,683	38,683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 2. 산림보호구역 지정 사유: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3조 제3 항 제3호(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3. 지정 연월일: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고시
- 4. 이의신정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 ※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 6. 기타사항
 - 이의신청서 제출: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산림공원과
 - 기타 문의사항은 장수군 산림공원과(☎063-350-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1. 이의신청서(서식) 1부.
 - 2. 도면 1부. 끝.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